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하여 상위 계급·직급 또는 직위에 특별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공무원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순직한 경찰공무원의 특별한 공적심사를 위한 특별승진심사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3. 주요내용

가. 순직으로 인한 특별승진임용 대상자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특별승진임용 대상자로 함(안 제86조제2항).

나. 특별승진임용의 취소 사유 추가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공적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90조제3항 신설).

다. 긴급한 경우의 특별승진임용 절차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사람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공적심사를 위한 중앙승진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특별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자격요건 등을 규정함(안 제91조의2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 규제와 관련 없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업무수행”을 “직무수행”으로, “공을 세우고 사망했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을 “공적을 세운”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양경찰청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91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제86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제91조제1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제86조제2항 이외의 사유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있어 특별승진임용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86조제2항 및 제9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임용규칙」 제18조제10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특별승진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제9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중앙승진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 ①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제86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위 이상 해양경찰공무원 중 경찰청장이 임명한 사람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인사, 노무 또는 해양경찰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특별승진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90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특별승진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4조(특별승진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특별승진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5조(중앙승진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특별승진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6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지정기록물에 전사 또는 순직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따른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으로 결정된 사람은 제8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6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생략)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는 <u>다음</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6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현행과 같음) ② -----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서 다음 ---.
1. 전투, 대(對)간첩작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u>업무수행</u> 중 현저한 <u>공을 세우고 사망했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u>	1. ----- ----- <u>직무수행</u> ---- ---- <u>공적을 세운</u> ----- -----
2. <u>직무수행 중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공을 세우고 사망했거나 부상을 입어 사망한 사람</u>	2. <u>해양경찰청장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u>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0조(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①·② (생략) <u><신 설></u>	제90조(특별승진의 제한 및 취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해양경찰청장은 제91조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제86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게 된 경우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u>
제91조(특별승진심사) ① 임용권	제91조(특별승진심사) ① -----

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려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을 특별승진시키려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다만, 제86조제
2항 이외의 사유로 -----

②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기 명확하고 재직 중 뚜렷한 공적이 있어 특별승진임용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86조제2항 및 제9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규칙」 제18조제10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 전단
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신 설>

② ~ ④ (생략)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86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거쳐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된 사람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8조제8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후에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게 해야 한다.

<신설>

특별승진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④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⑤ 제4항 -----

제91조의2(중앙승진심사위원회 구성의 특례) ①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제86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과반수를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승진심사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위 이상 해양경찰공무원 중 경찰청장이 임명한 사

람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인사, 노무 또는 해양경찰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	
연 락 처	(032) 835 - 2235